

거창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29
----------	-----------

제출연월일	2007. 9. 18.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6.25참전유공자에게만 지원하였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월남전쟁참전유공자 등에게도 지원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형평성 유지 및 명예를 높여 줌으로써,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로 간결하게 함

나. 용어의 정의를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춤(안 제2조)

다. “6.25참전 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하여 지원범위 확대함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6.25참전유공자로만 한정되어있는 지원대상을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와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자, 무공수훈자를 추가함으로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라. 지원대상자를 65세 이상인 자로 함(안 제3조)

마. 제명 변경으로 인한 별지서식의 일부분구 수정함(안 별지 제1호·제2호서식)

3. 개정근거

가. 관련법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 추가 소요금액 연간 20,000천원 정도

예산 확보 : 2008년도 본예산 반영 계획

다.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07. 6. 1.~ 6. 20.) 결과 : 의견 없음

거창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를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6.25전쟁”을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으로 하며, “6.25참전 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제대를 하였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면역된 군인
2.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3.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 한다)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4.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
5.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면역된 군인

제3조 본문 중 “주소를 둔 자”를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로 하고, 같은 조 본문 및 제1호 중 “6.25참전 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하고,

같은 조제2호 중 “제6호·제7호·제8호”를 “제6호·제8호”로 한다.

제4조 중 “①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6.25참전 유공자”를 “군수는 참전유공자”로 하고, 제1호부터 제2호 중 “6.25참전 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하며, 제4호 중 “기타 6.25참전 유공자”를 “그 밖에 참전유공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6.25참전 명예수당”을 “참전명예수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제1항제4호 중 “「거창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조례」”를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거창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u>」(이하 “<u>법률</u>”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u>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u>(이하“<u>6.25참전 유공자</u>”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u>6.25참전 유공자</u>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u>6.25전쟁기간 중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u></p> <p>2. <u>6.25전쟁 기간 중 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u></p> <p>3. <u>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u> <신 설></p> <p><신 설></p>	<p><u>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u></p> <p>제1조(목적) ----- 「<u>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 ----- <u>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u>----- -----“<u>참전유공자</u>”----- ----- -----.</p> <p>제2조(정의) “<u>참전유공자</u>”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를 말한다. 다만, <u>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제대를 하였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u></p> <p>1. <u>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면역된 군인</u></p> <p>2. <u>6.25전쟁에</u> ----- -----</p> <p>3. ----- -----<u>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u>-----</p> <p>4. <u>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u></p> <p>5. 「<u>병역법</u>」 또는 「<u>군인사법</u>」에 의한 현역 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u>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면역된 군인</u></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u>6.25참전 유공자</u>로서 지급일 현재 거창군내 1년 이상 <u>주소를 둔 자</u>로 한다. 단, 다음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6.25참전 유공자</u>일지라도 국가보훈청장이 법률 제3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경우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 	<p>제3조(지원대상자) -----<u>참전유공자</u>----- -----<u>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참전유공자</u>----- ----- 2. ----- -----<u>제6호·제8호</u> ----- ---
<p>제4조(지원사업) ①<u>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u>는 <u>6.25참전 유공자</u>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6.25참전 유공자</u>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만원 지급 2. <u>6.25참전 유공자</u>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3. (생략) 4. 기타 <u>6.25참전 유공자</u>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4조(지원사업) <u>군수</u>는 <u>참전유공자</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참전유공자</u> ----- ----- 2. <u>참전유공자</u> -----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 참전유공자</u> ----- ----- ----- ---
<p>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u>6.25참전 명예수당</u>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당은 매분기 첫월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u>참전명예수당</u> ----- ----- ----- ----- -----</p> <p>② ~ ④ (생략)</p>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우편번호 : □□□ - □□□ 경상남도 거창군 읍·면 리 번지 (전화번호)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수 귀하</p>											
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